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30 선고 2020가단84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나4832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30 선고 2020가단8485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국진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5, 6, 8,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2015. 6. 17.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11. 1.자 지급명령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6차10164호). 위 지급명령은 2016. 11. 4. C에게 송달되었고 2016. 11.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C은 부산 강서구 D 대 885㎡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D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부산 강서구 E 대 149㎡(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C의 숙부이다.

C은 2010. 5. 24. 피고에게 D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0. 5.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C은 2012. 12. 5. 피고에게 D 토지와 건물,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2. 12.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C은 2015. 3. 16. 피고에게 D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5. 3. 1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는 2017. 2. 16.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D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는 2017. 12. 12. E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10. 29.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9. 3. 14. E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0. 5. 28. E 토지를 매수하여 2021.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2. 29.부터 2015. 3. 12.까지 C에게 수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연봉 약 5,000만 원인 하위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은행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처지도 형편도 아니었다.

C은 원고를 찾아와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부 I과 피고가 임의로 해놓은 것이니 걱정을 말라고 하였기에 원고는 2015. 6. 17.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대여원리금 잔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2. 4.을 기준으로 82,275,000원(= 대여원리금 98,275,000원 - 2020. 7. 6. 입금받은 1,600만 원)이다. 피고는 C, I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2,27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C에게 1, 2차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것처럼 조작하여 2010. 5. 24.과 2012. 12.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② 피고는 C에게 허위채권 5억 7,000만 원(= 2010. 5. 17. 4억 원 + 2012. 12. 5. 1억 7,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D 토지와 건물의 시세가 약 15억 원인데도 평가금액을 5억 7,000만 원으로 조작하여 2015. 3. 13.자 대물변제계약을 작성한 다음 D 토지와 건물을 대물변제받는 수법으로 2015. 3.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는 2017. 2. 16. F조합에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③ 피고는 대물변제로 대여금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공동담보인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대여금 원금이 3억 원인 것처럼 조작하고 2017. 12. 11.을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이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부산지방법원 G와 관련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대여금 원금이 3억 원인 것처럼 다시 조작하고 2019. 2. 27.을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이 9,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H와 관련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E 토지에는 C의 모 J 소유인 건물이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제3자는 입찰을 꺼려한다는 사실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규정을 악용하여 2차례 유찰시킨 후 자신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자신이 납부한 낙찰대금 8,560만 원도 모두 배당받아 되찾아가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3.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① 이익의 취득과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②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①주장과 ②주장 중 피고가 2010. 5.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 피고가 2012. 12.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 피고가 2015.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5. 6. 17.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비로소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③주장을 검토한다.

피고는 2017. 12. 12. E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10. 29.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②주장 중 피고가 2017. 2. 16. 대출을 받은 것과 ④주장을 살펴본다.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C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고, C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2017. 2. 16. F조합에 D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2019. 3. 14. E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다음 위 경매절차에서 2020. 5. 28. E 토지를 매수하여 2021.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D 토지와 건물, E 토지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데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6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H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데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고,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